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수행자에 기술사사무소 포함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13일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업무 수행자로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하였다. 그동안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들은 법령상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법령해석 공문(건축과-6595, '04.12.22)을 통해 감리업무 수행을 주장하는 등 힘겹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나마도 입찰참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 공사감리수행자에 포함되어 당당히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 '06.7 민관합동 TF팀에서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36개 과제를 설정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중점과제로 채택, 지속적인 이행점검 및 법령개정 추진의 결과다. 이로써, 기술사 고유업무 영역 설정 36개 과제 중 27개 과제가 개정 완료되었으며, 9개 과제가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우리회는 앞으로 나머지 9개 과제의 조속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주무부처와의 지속적 연계를 통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개정안
<p>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략)</p> <p>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제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⑥ ~ ⑨ (생략)</p>	<p>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p> <p>-----</p> <p>-----</p> <p>-----</p> <p>「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 ⑨ (현행과 같음)</p>